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고시를 5년마다 실시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8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고시를 5년마다 실시 등	3
※ 참고자료	10
1.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현황	10

I. 제안경위

2025년 9월 23일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IV. 검토의견

1.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고시를 5년마다 실시 등

개정안은 ①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②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¹⁾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7항·제9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u>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	⑨ -----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 <u>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 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u>
---	--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 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은 국가하천이 되고,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은 지방하천이 되며,²⁾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함.³⁾

2) **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각 목 생략)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3) **법 제2조(정의)**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표] 국가하천의 지정기준(법 제7조제2항 각 호)

1. 유역면적 합계가 200km²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km² 이상 200km² 미만인 하천으로서
 - 가.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법람구역 내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m³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시·도지사는 국가하천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의 경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⁴⁾.

한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부담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 부담으로 하되,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시·도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음(법 제59조).⁵⁾

4) **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⑧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방정비 완료 구간이 48.8%(국가하천은 78.9%),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은 67.4%(국가하천은 86.5%)로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한 상황인 바,⁶⁾ 이로 인해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재난명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설수	피해액	시설수	피해액
2020	합 계	153	48,916	1,276	147,274
	7.28~8.11 호우	148	48,723	1,011	128,622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5	193	265	18,652
2021	합 계	-	-	209	14,673
	7.5~7.8 집중호우	-	-	98	7,314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	-	111	7,359
2022	합 계	25	3,234	543	131,252
	8.8~8.17 집중호우	23	2,970	427	58,803
	제11호 태풍 힌남노	2	264	116	72,449
2023	합 계	42	17,560	735	162,669
	6.27.~7.27. 호우	42	17,560	616	147,082
	제6호 태풍 카눈	-	-	119	15,587
2024	합 계	10	6,088	581	68,142
	7.8.~7.19. 호우	9	6,084	452	61,713
	9.19.~9.21. 호우	1	4	129	6,429
2025	합 계	78	10,676	939	219,162
	7.16.~7.20 호우	78	10,676	939	219,162
계		386	91,750	5,222	962,334

자료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6) 한국하천일람, 2023.12.31.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2012년(2022년 기준 10년 내) 이후 분만 반영

이에 더해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⁷⁾됨에 따라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하천정비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 현재
계	10,083.8	10,360.6	10,766.8	지방세 지원 (국비 지원 중단)
국비	5,687.0	5,691.0	5,696.8	
지방비	4396.8	4669.6	507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승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별도 내역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⁸⁾, 2024년 및 2025년 각각 지방하천 10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지정(승격)하여 관리 중임(참고자료 1.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현황).

7) '18년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20년부터 국고보조가 중단됨[지방소비세율 인상(11%→21%)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

8) 최근 홍수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하천법률위협이 큰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4년부터 신규 예산으로 편성

[2024~2026 승격하천 정비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국가하천정비사업	662,717	679,400	747,651
-승격하천정비	10,295	53,500	29,866

[국가하천 승격 현황]

지정일자	개소수	하천연장	비고
계	36	1,072km	-
2016.12.28	1	15km	신규(인천 굴포천)
2020.1.1	15	590km	신규 10개 (경기 목감천 등), 연장 5개 (충북 한강 등)
2024.10.1	10	200km	신규 8개 (삼척오십천 등), 연장 2개 (전북 전주천 등)
2025.1.1	10	267km	신규 8개 (강원 주천강 등), 연장 2개 (충남 갑천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런데 2026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승격 심사 및 고시 관련하여 정해진 일정이 없어, 지방하천 관리청(시·도지사)의 국가하천 승격 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하천 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지정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승격)하는 것은 하천의 관리주체 및 재원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⁹⁾¹⁰⁾,

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정기적·지속적 확대는 국가재정의 부담 증대를 초래하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힘.

10)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하천 지정의 정기적 심사 및 지정 고시 의무화는 2020년 재정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¹¹⁾, 안 제7조제9항 단서와 같이 특별재난지역¹²⁾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하천 지정의 법률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분권(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 및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천을 관리할 유인 감소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하천 지정(승격)은 유역 특성, 국가적 영향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 시점에 한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1) **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1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현황¹³⁾

□

국가하천 법적 지정요건(하천법 제7조제2항)

-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km²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km² 이상이면서 200km²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m³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 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국가하천 요건 충족 하천현황(‘23.12월 승격 용역보고서 기준)

구분		개소수	하천연장	전체하천 중 비율
우리나라 총 하천		3,841	29,574km	100%
국가하천 법적 최소 지정요건 충족 하천	계	441	11,839km	40%
	국가하천	73	3,602km	12%*
	지방하천	368	8,237km	28%

*

‘24~’25년 지방하천 20개 467km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현재 국가하천 비율은 14%임

□

승격 현황(지방 → 국가 하천)

지정일자	개소수	하천연장	비고
계	36	1,072km	-
2016.12.28	1	15km	신규(인천 굴포천)
2020.1.1	15	590km	신규 10개 (경기 목감천 등), 연장 5개 (충북 한강 등)
2024.10.1	10	200km	신규 8개 (삼척오십천 등), 연장 2개 (전북 전주천 등)
2025.1.1	10	267km	신규 8개 (강원 주천강 등), 연장 2개 (충남 갑천 등)

※

지난 40년간(‘83~’23) 16개소 승격, ‘24~’25년 20개소 승격

1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